



규정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페이지	1/10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추진기구
- 제3장 정원조정
- 제4장 전공의 폐지 및 처리

부칙
별표

작성부서	기획홍보처	제정일자	2016. 02. 18.
------	-------	------	---------------

구 분	작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당	입학관리 센터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외적 대학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학 및 전공(학과)의 경쟁력 제고 및 NCS기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표준점수”라 함은 구조조정평가 획득점수를 표준정규분포화한 점수로 서[별표 2]의 표준점수 산식에 의한 점수를 말한다.

② 학과라 함은 교육단위인 전공 또는 계열을 의미한다.

③ 폐과라 함은 전공 또는 계열의 학생모집을 폐지함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대학구조조정의 적용대상은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 및 계열로 한다.

② 구조조정은 전공 및 계열의 신설, 통합, 폐과, 명칭변경, 정원의 증감을 말하며, 그에 따른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조조정의 원칙) ① 구조조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 이행
3.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 학과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구조조정의 절차 및 시기) ① 기획처는 매 학년도 교육부 정원조정 보고 이전 90일 이내에 구조조정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조정을 발의 할 수 있다.<개정 2018.02.19.>


② <삭제 2016.10.13.>

③ <삭제 2016.10.13.>

④ 구조조정 절차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도록 한다.

⑤ 구조조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중전 제5조의 ②항 ③항은 제 12조의 2로 이동<2016.10.13.>]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제2장 추진기구

제6조(구조조정위원회) ① 대학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추천하는 5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2.19.>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하고,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한다.

제7조(기능) 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구조조정 평가 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조조정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구조조정 평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구조조정 평가 결과 및 관련 서류
5. 구조조정 평가 자구노력계획서 관한 사항
6. 구조조정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사무처리) 구조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및 정원조정

제12조(평가에 의한 군별 분류) ① 전공 및 계열의 경쟁력을 평가지표로 측정(이하 “구조조정평가”[별표1]라 한다)하여 평가를 한다.

② 제1항의 구조조정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 및 계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A등급: 전공 및 계열별 취득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백분위가 상위 20%이내인 전공 및 계열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2. B등급 : 전공 및 계열별 취득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백분위가 상위 20%초과 50%이내인 전공 및 계열
3. C등급 : 전공 및 계열별 취득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백분위가 상위 50%초과 70%이내인 전공 및 계열
4. D등급 : 전공 및 계열별 취득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백분위가 상위 70%초과 90%이내인 전공 및 계열
5. E등급 : 전공 및 계열별 취득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백분위가 하위10%미만인 전공 및 계열

제12조의2 (구조조정의 진행절차)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전공 및 계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조조정 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 E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학과는 유사학과와 통합 등 자구노력계획안을 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16.10.13.>

③ E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통합으로 결정된 학과는 학과명, 교육과정조정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개정 2016.10.13.>

[본조신설 2016.10.13.]

[제5조에서 이동 <2016.10.13.>]

제13조(평가지표, 가중치, 배점) 제12조에 따른 구조조정평가의 평가지표, 가중치, 배점은 [별표 1]과 같이 시행한다.

제14조(연도별 평가결과 반영비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2개 학년도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1. 당해연도 평가점수 50%
2. 전년도 평가점수 30%
3. 전전년도 평가점수 20%

제14조의2 (기준과 범위의 적용) ① 구조조정 대상 계열 및 전공으로 계열 및 전공명이 변경되거나 해당전공을 승계한 신설전공의 경우 구조조정 전 전공의 지표실적을 적용한다.

② 새롭게 신설된 계열 및 전공은 신설 이후의 실적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10.13.]

제15조(정원조정) 제12조에 따라 분류된 전공 및 계열에 대한 정원조정은 [별표3]과 같이 시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행할 수 있다.

제16조(입학정원 미충원 사유에 의한 정원조정) 입학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모집단위는 그 충원하지 못한 인원 이내의 인원을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원할 수 있다. 다만, 신입학 추가합격 대상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하여 진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감축하지 아니한다.

제17조(구조조정평가 및 입학정원 미충원 사유에 의해 확보한 인원 배정 원칙) 제15조에 따라 확보한 인원은 신설학과나 이 대학교의 발전전략에 따라 육성할 학과에 우선 배정한다.

제18조(자율 또는 협의에 의한 정원조정) ① 제15조, 제16조의 정원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학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자율 또는 협의에 따라 정원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모든 전공 입학정원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 (구조조정 기준의 지속적 검토와 개선) ① 구조조정위원회의 주관부서에서는 구조조정 기준 및 진행절차, 지원사항 등이 타당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한다.

② 구조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조조정위원회 및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변경내용은 총장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전체 전공에 공지한다.

[본조신설 2016.10.13.]


제4장 폐과 및 처리

제19조(통·폐합대상 선정기준) ① 학과 중 제12조 구조조정평가 결과가 2년 연속 E등급 또는 신입생 충원률이 2년 연속 80% 미만인 학과는 통·폐합할 수 있다.<개정 2016.10.13.>

제20조(폐과된 전공 및 계열의 운영) ① 폐과된 전공 및 계열의 차년도 신입생은 모집·선발하지 아니한다.

② 전공 및 계열의 폐과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전공 및 계열의 재학생 및 복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폐과된 전공 및 계열의 수업은 유사학과와 통합하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

	규정		문서번호	TWP-A704
			제정일자	2016. 02. 18.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2

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④ 폐과된 이후 재학생 존속기간까지 또는 2년제의 경우 최대 4년, 3년제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제21조(교원신분) ① 폐과된 전공교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부소속으로서 학부 내 또는 학부 간에서 교원의 전공과 유사성이 있는 교과목 시간부여
2. 전공과 유사한 교양과목 존재 시 시간 부여
3. 전공전환을 필한 교원의 해당 전공으로의 전보

② 겸임 및 초빙교원은 임용기간이 재학생 존속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임기를 재학생 존속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다수일 경우 대학의 기여 및 교수업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별표 1] 1. 구조조정 평가지표 배점표

2. 가산지표점수 부여 방법

[별표 2] 구조조정 평가지표 지표별 산식

[별표 3] 구조조정평가에 따른 등급기준별 정원 조정 방법

[별표 1]

1. 구조조정 평가지표 배점표

구분	배점	지표명	비중
입학	10	최근 3개년 입학경쟁률	20
		최근 3개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80
재학	50	최근 3개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4.1일자)	60
		최근 3개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10.1일자)	40
취업	40	최근 3개년 취업률	
합계	100	※ 각 지표별 표준점수의 연도별 가중치는 당해년도 50%, 전년도 30%, 전전년도 20% 임	
정원 외 학생 관련 가산지표	(1)	당해연도 정원 외 신입생(산업체위탁생) 충원율	3
	(1)	당해연도 정원 외 재학생(산업체위탁생) 충원율	
	(1)	당해연도 전공별 원가	
총계	103		

2. 정원 외 가산지표에 점수부여 방법

구분	등급	가산점수
지표별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상위 20%이내의 전공 및 계열	A	1
지표별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상위 20%초과 40%이내의 전공 및 계열	B	0.7
지표별 표준점수로 변환한 점수의 상위 40%초과 60%이내의 전공 및 계열	C	0.5

[별표 2] 구조조정 평가지표 지표별 산식 <개정 2016.10.13.>

지 표 명	지표산식	표준점수 산출식	비 고
입시경쟁률	당해연도 정원 내 지원자수 총합 / 당해연도 정원 내 모집인원수	$10 * [(전공경쟁율 - 대학경쟁율) / 표준편차] + 50$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당해연도 정원 내 입학자수 / 당해연도 정원 내 모집인원 * 100	$10 * [(전공신입생충원율 - 대학평균신입생충원율) / 표준편차] + 50$	정원 내 입학자수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모집, 추가모집을 통한 입학자수의 총합
재학생 충원율 (정원 내)	당해연도 정원 내 재학생수(4.1일자) / 당해연도 학생정원 * 100	$10 * [(전공재학생충원율(4.1일자) - 대학평균재학생충원율(4.1일자)) / 표준편차] + 50$	
	당해연도 정원 내 재학생수(10.1일자) / 당해연도 학생정원 * 100	$10 * [(전공재학생충원율(10.1일자) - 대학평균재학생충원율(10.1일자)) / 표준편차] + 50$	
취업률	$\{ (당해연도 건강보험취업자수(6.1)/취업대상자수) + (전년도건보 및국세DB연계취업자수(12/31)/취업대상자수) \} / 2 * 100$	$10 * [(전공취업률 - 대학평균취업률) / 표준편차] + 50$	대학자체취업률 조사 범주 :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기준년도 : 평가 전년도
신입생 충원율 (정원 외(산업체위탁생))	당해연도 정원 외(산업체위탁생) 등록인원 / 당해연도 정원 외(산업체위탁생) 모집인원 * 100	$10 * [(전공 정원 외(산업체위탁생) 신입생충원율 - 대학 전체 정원 외(산업체위탁생)신입생충원율) / 표준편차] + 50$	
학생 충원율 (4.1일자)(정원 외(산업체위탁 생))	당해연도 정원 외(산업체위탁생) 재학생 수 / 당해연도 정원 외 학생정원 * 100	$10 * [(정원 외(산업체위탁생) 재학생수 - 당해연도 정원 외 학생정원) / 표준편차] + 50$	
전공별 원가			

[충원율 산식]

- ※ 증원전공 : 당해연도 충원율 + (전년도충원율-당해년도 충원율)/ 2
- ※ 감원전공 : 전년도 충원율+ (당해년도 충원율-전년도충원율)/ 2
- ※ 증원 및 감원으로 부여된 충원율 값은 3년간 적용됨.

- ※ 증원전공은 상기 식에 의한 값과 당해연도 값 중 큰 것을 적용한다.
- ※ 감원전공은 상기 식에 의한 값과 당해연도 값 중 작은 것을 적용한다.

[별표3]구조조정평가에 따른 등급기준별 정원 조정 방법

등급	정원조정 방법
“A~C등급”	① 대학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확보할 정원이 “E군” 및 “D군”에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순위를 C군, B군, A군의 순서로 함
“D등급”	① 입학정원 최대 15% 이내를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정책에 따라 감축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② 자구노력계획이 채택된 경우 심의에 따라 1~3년 감축유예 할 수 있음 ③ 대학의 정원조정 계획이 없는 경우, 1년 감축유예 할 수 있음
“E등급”	① 입학정원 최대 20% 이내를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정책에 따라 감축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② 자구노력계획이 채택된 경우 심의에 따라 1~3년 감축유예 할 수 있음 ③ 대학의 정원조정 계획이 없는 경우, 1년 감축유예 할 수 있음